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97
----------	------

2014년 2월 20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4년 2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4.2.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조례」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설치근거와 사용용도를 규정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기여로 제공되는 사항 중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등의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 기금을 설치함(안 제3조).

-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4조).
-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 취약 지역내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등 기금의 용도를 규정함(안 제6조).
- 기금의 운용계획 방안과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의 지정 및 기금관리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9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 조직담당관(위원회) : 협의 완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관련 조문	검 토 결 과	조치내용
제9조 ~ 제13조	<p>[일부 개선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 설치 시에는 부패의 소지가 있는 위원의 결격·해촉 규정과 기타 투명성 관련 규정 등이 제정되어야함. ·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 위원장의 직무 관련 규정 · 기타 위원회 회의자료 보관, 공개여부 등 행정절차의 투명성 관련 규정 	- 반영

-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 사항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2013. 5.23.~6.12.) 결과 : 의견없음

4. 조례 입법 추진경위 및 관련사업 추진현황

○ 추진경위

- 2009.2. : 新 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방침
- 2009.3~6. : 신청서 접수·타당성 평가, 대상지선정(16개소)
- 2009.9~2011.7. : 제안서 접수(10개소) 및 협상 진행(5개소)
- 2010.11.5. : 新도시계획제도 운영개선 및 향후계획 방침
 - ▶ 법률문제 제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식으로 전환 등
- 2011.3.9.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공포
 - ▶ 건축물 등 시설 공공기여 근거 마련
- 2011.7.28./9.8.: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2011.9. : 新도시계획제도 운영개선시행 방침
 - ▶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및 기준 마련
- 2012.4.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공포
 - ▶ 대규모 유희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치구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공 등 법적인 공공기여 근거마련
- 2012.11.1. :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 ▶ 대규모 유희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공공기여 기금 설치운영
 - ▶ 세부 운영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2012.12.24. : 공공기여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 제정 추진방침
- 2013.1~ 4. : 관계부서 협의
- 2013.5~6. : 조례(안) 입법예고(제출 의견 없음)
- 2013.6. : 조례(안) 법제심사 의뢰
 - ▶ 조문 수정 및 관계부서 협의(2013.7~11)
- 2014.1~2. : 조례(안)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
- 2014.2.6.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조례(안) 시의회 제출

○ 사전협상 대상지별 추진현황

구 분	연 번	대 상 지		진 행 내 용	추진방향
협상 완료	1	강동구	서울승합	위원회 심의완료, 건축허가신청 준비 (공공기여율 43%)	건축허가 준비
	2	마포구	홍대역사	위원회 심의완료, 건축허가신청 준비 (공공기여율 35%)	"
	3	용산구	용산관광 터미널	위원회 심의완료, 건축허가신청 준비 (공공기여율 23%)	"
협상 보류 · 중단	4	노원구	광운대역사	협상조정협의회 및 교통부영향 저감방안 전문가T/F 자문(5회), (공공기여율 35%)	코레일측 요청으로 협상보류
	5	성동구	삼표레미콘	초고층 등 도시계획원칙 불부합 (공공기여율 48%)	협상중단
협상 미착수 (제안서 접수)	6	서초구	롯데칠성	제안서 보완 중, 선제적 검토 TF운영 (공공기여율 40%)	협상준비
	7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제안서 보완 중 (공공기여율 25%)	"
	8	구로구	백광산업	제안서 보완 중 (공공기여율 45%)	"
	9	서초구	남부터미널	제안서 보완 중 (공공기여율 35%)	"
	10	동대문구	동부화물터미널	제안서 보완 중 (공공기여율 35%)	"
제안서 미접수	11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사업계획 준비중, 지침 마련중 (공공기여율 35%)	준비 중
	12	성동구	장안평 자동차매매장	다른 개발방식 검토 중 (현 도시계획시설 범위내 개발대안)	협상대상지 제외 예정

5.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이 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기금의 설치근거와 용처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중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며(안 제3조),
 -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공공기여 중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재원으로, 관련 규정에 다른 기반시설 취약지역내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로 활용하고(안 제6조),
 - 기금의 운용계획 방안과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의 지정 및 기금관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하며(안 제7조 및 제8조),
 - 기반시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2012.4.15. 시행)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자치구에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 즉, ‘新도시계획제도’에 따라 추진중인 사전협상 대상지 중 기반시설 기부채납 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같음하고자 할 경우 이의 수입 및 지출 관리에 적용키 위한 것으로 판단됨.

- 기금의 설치는 재정운영 절차에 있어서 특별회계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회계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는 바, 통상 특별회계로 관리할 경우, 시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예산 통제가 용이하다 볼 수 있으나, 위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부담금 성격의 재원으로 사안에 따라 수입조치 되어 세입 예측이 어렵고, 세출 용도가 법령에 의해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에서 정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기금으로 운영한 후 중간평가를 거쳐 특별회계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방안이라 사료됨(참고자료1).
- 제출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12.31.까지 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됨에 따른 것이며,
 -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국제법 시행령에 따른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와,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그 밖에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으로 하였음.
 - 안 제7조의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관련 기본법 및 지침에 따른 것이며, 다만 기금을 자치구별로 구분·운용하는 이유는 국제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13호에서 설치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관할 시·군·구(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로 한정하였기 때문임.

- 다만 일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공공기여’는 상위법령 조문인 ‘기반시설 설치 비용’과 같이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용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안 제6조 기금의 용도 중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는 마치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는 것처럼 오해의 여지가 있어 불필요한 조문이라고 사료됨.
 - 안 제10조 심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심의회 명칭을 명확히 하고 당연직 위원 대상인 같은 조 제2항 제3호 ‘예산부서와 기금사업 관련 부서의 장’이란 표현이 모호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음.
 - 그 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13호에서 설치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관할 시·군·구(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로 한정하는 것은 서울의 지역균형 발전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으니 중앙정부에 법령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음.
- 종합하면, 이번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기금의 설치근거와 사용용도를 규정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조문의 수정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별첨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9.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10.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97
----------	------------

2014년 2월 20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안 중 일부 용어·명칭 및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수정·보완한 것임.

2. 수정주요내용

- “공공기여”라는 용어 대신에 상위법령과 같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변경하면서 용어의 뜻 및 관련조문도 같이 수정함. (안 제2조 제2호, 안 제3조)
- 기금의 용도 중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를 삭제함. (안 제6조 제4호 삭제)
- 기금 운용 및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임시회 기간 중 기금 관련부서를 관장하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제4항 신설)
- “서울특별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함. (안 제9조 제1항)
- “예산부서와 기금사업 관련 부서의 장”을 “예산부서 및 기반시설 설치기금과 직접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변경함. (안 제10조 제2항 제3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시행일을 명확히 함. (부칙 신설)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설치비용을 말한다.

안 제3조 중 “공공기여로 제공되는 사항 중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을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로 한다.

안 제6조 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 및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임시회 기간 중 기금 관련부서를 관장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다.

안 제9조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반시설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안 제10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예산부서 및 기반시설 설치기금과 직접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공공기여”란 사업자가 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 변경 및 건축제한 완화내용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반시설 부지 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u> 	<p>제2조 (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2. <u>“기반시설 설치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설치비용을 말한다.</u>
<p>제3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공공기여로 제공되는 사항 중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효율적 관리</u>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3조(설치) ----- ----- <u>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u> ----- ----- -----</p>
<p>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생략) 4.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u> 	<p>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제정안과 같음) <u><삭제></u>
<p>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p> <p style="padding-left: 20px;">①~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20px;"><u><신설></u></p>	<p>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p> <p style="padding-left: 20px;">①~③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④ <u>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 및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임시회 기간 중 기금 관련부서를 관장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다.</u></p>
<p>제9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p> <p style="padding-left: 20px;">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u>기금운용심의위원회</u>(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 (생략) 	<p>제9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p> <p style="padding-left: 20px;">① ----- ----- ----- <u>기반시설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0조(심의회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2. (생략) 3. <u>예산부서와 기금사업 관련 부서의 장</u> ③~④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0조(심의회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2. (제정안과 같음) 3. <u>예산부서 및 기반시설 설치기금과 직 접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u> ③~④ (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취약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설치비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취약 지역내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2.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자치구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자치구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 및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임 시회 기간 중 기금 관련부서를 관장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다.

제8조(기금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 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 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 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 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도시계획, 마을공동체,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예산부서 및 기반시설 설치기금과 직접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2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기반시설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에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